

전자등기 검색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How to Overcome the Name Errors in a Newly
Proposed Personal Property Filing System
in View of the Recent U.S. Case

박 환 일**
(Park, Whon-II)

〈 차 례 〉

- I. 문제의 제기
- II. 미국에서의 전자등기 검색상의 문제
- III. ‘스피어링 툴 사건’의 파장
- IV.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V. 결론 - 가능한 해결방안

주제어: 동산담보제도, 공시, 전자등기, 미국 통일상법전, 조세담보권, 부동담보, 전자태그, movable collateral system, public notice, electronic filing/registration, Uniform Commercial Code (UCC), tax lien, floating charge,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I. 문제의 제기

권리의무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고 공시하는 등기·등록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그의 이용은 무척 편리해졌으나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항을 이용자가 틀리게 입력할 경우 검색 결과가 “空無”한 것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해 자료를 검색하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겪고 있다. 그러나 권리의무관

* 이 연구는 2007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계에 있어서 자기가 검색한 것이 옳다고 믿고 자기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음에도 이를 없다고 믿고서 거래할 경우에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각종 민원업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등기·등록사항에 개재될 수 있는 오류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할 기회조차 없다면 이러한 오류는 적잖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정부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動産擔保制度¹⁾가 실시될 경우에는 심각한 양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인 채무자가 용이하게 내놓을 수 있는 기업동산이나 매출채권에 非占有型 擔保權(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을 설정하거나 이를 신탁적으로 양도(fiduciary transfer)하는 식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²⁾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이동·이전 및 가치의 변동 가능성, 등기·등록 및 열람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시로 관련정보를 입력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전자등기(electronic filing/registration)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동산담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 비추어 잘 알 수 있거니와,³⁾ 우리나라에서도 권리관계의 공시, 이해관계인간의 다툼 예방, 시간·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누구나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電子登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하고 검색·열람을 할 때에는 종종 착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적으로 등기를 열람하고 등·초본을 발급받을

- 1) 재정경제부는 2007년 2월 기업환경개선 제2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논의와 검토에만 그쳤던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등에 대하여 기업 투자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행정처도 채권 및 동산양도를 공시할 수 있는 특수등기방안에 대하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입법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7.2.15; 인터넷내일신문 2007.2.15.
- 2) 오늘날 기업들은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①재고자산·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②일정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cash flow)을 유동화하거나, ③일정 수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법제연구회는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日本企業法制研究會(擔保制度研究會)報告書, 「不動産擔保から事業の収益性に着目した資金調達へ」, 經濟産業省, 2003.1; 우리나라에서는 ②는 자산유동화(ABS)에 의하여, ③은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으로 이용되고 있다. 박원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제1권 2호, 2004.12.
- 3) 일본의 「동산 및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등기에 관한 해설자료로는 박원일,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1호, 2006, 106~108면 참조.

수 있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에 관한 오류의 발생 및 그 해결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서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자산유동화(ABS)의 대상인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을 양도한 사실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⁴⁾하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감독원의 電子公示 시스템⁵⁾에 올려 일반에 공시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동산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도 채무자가 무슨 동산을 어떻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알아보려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권리관계의 조사·확인을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존할 경우에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에 봉착⁶⁾하게 되는 바, 예컨대 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실제와 다른 경우라든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면서 그와 다르게 입력한 검색어로는 해당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채무자의 이름을 틀리게 검색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상적으로도 기업의 이름에 혼동이나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한데,⁷⁾ 당해 기업이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이름⁸⁾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본고는 動産의 전자등기를 시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美國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동

4) 현재 법률용어상 법원 등기소에 하는 것은 ‘登記’이고, 행정관청에 하는 것은 ‘登錄’이라 하고 있다.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은 같지만 기재사항 및 효과는 근거법에 따라 다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외국의 사례를 포함하여 모두 ‘登記’로 일컫기로 한다.

5)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DART) System. <<http://dart.fss.or.kr>>

6) 컴퓨터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 문장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집합이론(Boolean Algebra)에 따라 대상 자료를 검색한다. 이 때 컴퓨터가 인식하는 문자, 숫자는 전부 0과 1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7) 최근 들어 회사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여 소비자와 주주가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수·합병, 계열 분리 등이 활발해지면서 심지어 해당 회사 직원과 업계 종사자까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쓰리세븐은 손톱깎이 회사이고, 쓰리세븐은 가방회사이다. 설탕과 밀가루 등을 만드는 삼양사, 라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 최루탄을 만들던 삼양화학은 엄연히 서로 다른 회사들이다. 1980년대에 해태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해태유업은 1997년 해태그룹이 부도날 때 계열사라는 오해를 사 함께 부도가 나기도 했다. 조선일보, “다른 회사? 동명회사 헛갈리네”, 2007.4.3.

8)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에 英字를 쓰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향이 심해졌다. 예컨대 주식회사 포스코의 경우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 포철, 포스코, POSCO를 함께 쓰고 있는데 모두 같은 회사를 가리킨다. 법원이 2008년부터 상업·법인등기에 로마자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이러한 사례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산 등기제도(filing system)의 전산화가 이루어졌고⁹⁾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司法的인 노력은 물론 立法的인 조치가 행하여진 바 있다. 大陸法系에 속하는 우리 담보법제가 미국의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는 미국의 동산담보 및 등기제도를 살펴보고, 검색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기울여졌는지 알아본 후(II) 최근에 문제가 된 聯邦高等法院의 판결이 그러한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소개한다(III). 그리하여 미국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동산등기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IV)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V).

II. 미국에서의 전자등기 검색상의 문제

1. 통일상법전 제9편의 규정

미국의 동산담보제도는 통일상법전 제9편(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9: Secured Transactions. 이하 “UCC 9편”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UCC 9편을 시행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동산(personal property)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해당 카운티(county)¹⁰⁾의 등기소에 권리관계를 기재한 금융명세서(financing statement)를 등기(filing)하도록 하였다.¹¹⁾ 만일 등기부상에 해당 카운티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재산 중에 담보권 설정 기록이 있으면 이는 그 담보권자(secured creditor)가 변제의 優先權(priority)을 갖고 있음을 公示(public notice)하는 것이다. 부동산(real estate)의 경우에도 오래 전부

9) 미국변호사협회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UCC 제9편에 의한 등기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American Bar Association Filing System Task Force, "Alces Survey," 1991). Lynn M. LoPucki, "Computerization of the Article 9 Filing System: Thoughts on Building the Electronic Highway," 55 Law & Contemp. Probs 5, 6 (1992).

10) 카운티란 미국에서 州 다음의 지방자치행정단위를 말하며 여러 개의 市(city, town)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는 산타모니카시와 같은 레벨의 LA시가 있고 오렌지 카운티와 동급의 LA카운티가 있다. 루이지애나와 알라스카에서는 각각 패리시(parish), 보로(borough)라 부른다.

11) 등기부에 채권자로 등기될 수 있는 사람은 저당권자(mortgagee), 채권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judgment creditor), 조세채권(tax lien)을 가진 정부당국(taxing authorities) 등이다.

터 등기를 하였으므로 현재 미국의 50개 주의 3천여 카운티에서 동산 및 부동산 등기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¹²⁾

그런데 미국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입력된 데이터와 다르게 검색을 하는 경우이다. 동산의 경우 채무자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부를 검색하여야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등기 제도가 존재하고 정확하게 운영되는 것이야말로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고 법률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¹³⁾

미국에서는 입력된 데이터와 검색어가 다른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차질없이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컨대 I.B.M. Corp.와 I. B. M. Corp, IBM Corp., ibm corp.은 컴퓨터가 각각 다르게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기업이므로 구두점과 띄어쓰기, 대·소문자를 무시하고 검색을 함으로써¹⁴⁾ 동일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회사 형태도 Corp. 외에 Corporation, Inc., Company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¹⁵⁾

2. 채무자 이름 검색상의 오류

미국에서는 채무자의 이름을 가지고 등기하거나 검색할 때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법학자와 UCC 기초위원들, 州정부의 등기공무원들이

12) Lynn M. LoPucki, *Information Law: A Systems Approach Part I*(class packet), 2005, p.179.

13) *Id.* at 180.

14) 이와 같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검색 로직”(search logic)이라 한다. 그런데 각 주 정부는 이러한 검색 로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5) 이에 관한 UCC 상의 근거규정은 제9-506조와 제9-503조 (a)항이다.

제9-506조 (a) 제9편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금융명세서는 사소한 착오나 누락이 있더라도 그것이 금융명세서를 심각하게 오인시키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b) (c)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이름을 제9-503조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기재하지 아니한 금융명세서는 이를 심각하게 오인시키는 것으로 본다.

(c) 등기소의 기록을 등기소의 표준 검색 로직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으로 검색하였다면 제9-503조 (a)항에 따라 채무자의 이름을 충분히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러한 이름은 금융명세서를 심각하게 오인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9-503조 (a) 금융명세서는 개별적인 . . .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이름을 충분히 기재한 것으로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거의 성공단계에 이르렀을 즈음 이를 한낱 물거품으로 만드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¹⁶⁾ 바로 2005년 6월에 선고된 제6지구 항소법원의 ‘스피어링 툴 사건’¹⁷⁾이 그것이다.

사실 기업체의 이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정확을 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업 이름이 편지지, 봉투, 간판, 색인부마다 다를 수 있으며, 略語(abbreviation)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정확한 기업명칭은 그 등기부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간단히 알아볼 수 있지만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검색에는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마련이었다.

또한 일부 철자가 틀렸더라도 그것이 사소한 것(minor)이거나 심각하게 오인케 하는 것(seriously misleading)이 아니면 무시할 수 있다. 미국 법원에서는 UCC의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이른바 “합리적이고 성실한 검색”(reasonable diligent search test)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곤 하였다. 합리적으로 성실하게 검색하였다면 금융명세서의 등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유효한 등기로 본다는 것이다. 그 취지가 타당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등기부 검색 절차가 매우 힘들어지고 불확실해질 우려가 있다. 비록 10여년 전의 통계이지만 미국 은행들이 2천만 내지 7천4백만 달러의 대출을 취급할 때 드는 등기조사비용은 평균 2만5천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법원이 “합리적이고 성실한 검색”의 기준을 유지하는 한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험상품까지 나와 있는 실정이다.¹⁹⁾

이에 따라 UCC 9편의 개정을 추진할 때 개정작업을 맡은 위원들(UCC drafters)이 유념한 사항은 어떻게 하면 “정확한 이름을 기재하고 또한 이를 검색하게 할 것인가”였다. 그리하여 “합리적이고 성실한 검색이 아예 필요 없는” 방안을 모색하여 마침내 금융명세서를 등기하는 사람이나 검색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 마디로 담보물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등기를 하고, 컴퓨터의 검색 로직을 최대한 활용케 하자는 것이

16) LoPucki, "The *Spearing Tool* Filing System Disaster", March 2006. p.2,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890312>. [2007.3.31]

17) *United States v. Crestmark Bank* (In re *Spearing Tool and Manufacturing Co., Inc.*), 412 F.3d 653 (6th Cir. 2005), *rehearing denied*, 2005 U.S. App. LEXIS 29219.

18) Peter A. Alces, "Abolish the Article 9 Filing System," 79 *Minn L. Rev.* 679, 691 (1995).

19) LoPucki, *supra* note 16) Fn. 8, at 3.

었다. 예를 들어 회사인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지에 법인 목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 또는 검색 신청을 정확하게 접수할 수 있다.²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도 법인 목록을 알파벳順으로 보여주는 폴더가 열리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게 하는 ‘선택’(point-and-click)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면 된다. 이리하여 미국의 50개 주가 새로 개정된 UCC 9편을 일체히 시행하였던 2001년 7월 1일을 기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검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기소에서 채용하는 검색 로직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채무자가 무슨 이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²¹⁾

그러나 2005년 6월의 스피어링 톨 사건은, 비록 UCC 9편의 모든 등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담보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는 하지만,²²⁾ 이러한 노력(debtor name error elimination project)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말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3. 검색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立法을 한다면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미국 UCC 9편의 담보권 등기와 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A주식회사(채무자)가 B은행에 高價의 기계·장비(machinery & equipment)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A사가 대출신청서에 “담보제공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representation)하였더라도 B은행은 당해 물건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조사할 것이다. 만일 C은행이 이미 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면 B은행은 A사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든가, 다른 조건으로 대출을 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UCC 9편에 의한 등기 시스템은 금융명세서(financing statement)²³⁾의 등기와 색인부 정리, 열람 신청, 검색 및 열람의 순서로 이루어

20) *Id.*, at 5.

21) 새로 개정된 UCC 제9편에 따라 각주의 등기소에서는 온라인 상으로 정확한 이름을 보여주고 일부 주에서는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Id.*, at 6.

22) 대부분의 주에서는 조세담보권과 UCC 9편의 동산담보권을 동일한 색인부(index)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Id.*

23) 금융명세서에는 당해 거래를 특정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담보권자의 이름과 주소, 담보물의 내용 및 성상을 기재하여야 한다. UCC §9-502(a).

진다.²⁴⁾

만일 B은행이 A사의 등기부와 담보제공목록을 검색하고도 현재의 담보권자인 A은행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채무자의 이름에 관한 사소한 등기상의 착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등기공무원이 발견할 수 없는 착오라 하여 봐주게 되면 이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사람이 오류의 종류와 형태를 가려서 비슷한 이름까지 일일이 검색하여야 하므로 그에게 심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²⁵⁾

UCC 9편 개정 전의 제9-402조는 “금융명세서가 채무자의 이름을 충분히게 보여주는 한 설령 심각하게 오인하게 하는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본다”²⁶⁾고 규정되어 있었다. 조문상으로 보면 금융명세서에 채무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그대로 등기된 경우에 그 이름의 오류가 사소한 것이고 채무자를 오인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금융명세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사람이 그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당해 담보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州에 따라서는 검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출력된 법인색인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 같은 와일드카드 기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어느 주에서는 법인색인부의 열람도 불허하고 단지 검색신청만 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마다 검색방식이 다른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검색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름을 바꿔가며 열람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았다.²⁷⁾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형태의 오류가 등기된 사항을 심각하게 오인케 하고 당해 금융명세서를 無效로 하는 것인지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합리적이고 성실한 검색자가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당해 등기를 심각하게 오인시키는 것으로 보았다.²⁸⁾ 그러나 여기서 파생되는

24) 미국에서는 설립지의 주에서 회사를 등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설령 동일한 이름을 가진 회사가 2개 이상의 주에서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설립지 주(jurisdiction)까지 포함하여 검색하는 한 혼동이 생길 여지가 없다. LoPucki, *supra* note 16), at 7-8.

25) *Id.*, at 9.

26) A financing statement sufficiently shows the name of the debtor if it gives the . . . corporate name of the debtor. . . . A financing statement substantially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is effective even though it contains minor errors which are not seriously misleading.

27) 일부 주에서는 법인색인부를 민간 데이터베이스 업체에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이들 민간 DB업자들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28) *Transamerica Commercial Finance Corp. v. General Electric Capital Corp.* (In re Wardcorp, Inc.), 133 B.R. 210 (Bankr. S.D. Ind. 1990). 이 사건은 인디애나 주의 검색

의문은 검색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합리적으로 성실하게 검색하였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테면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회사이름을 달리 어떻게 쓰는지 알아본다거나, 민간 DB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해 보아야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물론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검색방법이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거액을 대출해주는 은행으로서는 합리적이고 성실한 검색자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했다.

종래 UCC 9편의 등기방법으로는 채무자 이름의 오류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UCC의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정된 UCC 9편에서는 등기 및 검색절차를 단순화시키는 아주 대담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를 정확하게 등기하여야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UCC 제9-503조 (a)항에 의하면, “금융명세서는 (1) 채무자가 등기된 법인인 경우 등기지의 공적기록부에 설립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채무자의 이름을 충분히 기재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²⁹⁾

그리고 개정된 UCC 9편은 채무자 이름의 오류가 등기사항을 심각하게 오인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으로 등기소의 기록을 검색하였을 때 등기소 컴퓨터의 표준화된 검색 로직을 사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였다.³⁰⁾ 여기서의 검색 로직이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상의 처리기법을 말하는데, 개정된 UCC 9편의 附錄으로 주별로 채택한 모범규정(model regulations)³¹⁾에 의하면 구두점, 띄어쓰기,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도록 하였다. 등기를 하는 입장(filer)에서는 구두점, 띄어쓰기, 대소문자, 회사형태의

시스템을 다룬 판결이었다.

29) U.C.C. §9-503(a). Sufficiency of debtor's name. A financing statement sufficiently provides the name of the debtor, (1) if the debtor is a registered organization, only if the financing statement provides the name of the debtor indicated on the public record of the debtor's jurisdiction of organization which shows the debtor to have been organized.

30) U.C.C. §9-506(c). Financing statement not seriously misleading. If a search of the records of the filing office under the debtor's correct name, using the filing office's standard search logic, if any, would disclose a financing statement that fails sufficiently to provide the name of the debtor in accordance with Section 9-503(a), the name provided does not make the financing statement seriously misleading.

3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rporation Administrators, *Model Administrative Rules, Uniform Commercial Code, Revised Article 9*, available at <<http://www.iaca.org/node/46>>. [2007.3.31]

표시³²⁾ 외의 이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서 UCC 9편 개정 전에는 有效 처리되었던 단순한 철자상의 오류도 등기 자체를 無效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채무자의 이름을 잘못 입력한 수많은 등기를 무효로 할 수 있음에도³³⁾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는 개정된 UCC 9편의 利點은 검색하는 사람(searcher)이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검색하기만 한다면 한 번에 유효한 등기(effective filing)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³⁴⁾

이와 아울러 개정된 UCC 9편은 금융명세서의 등기장소를 채무자인 법인의 설립지로 바꾸었다.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채무자의 법인색인부를 보고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착오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point-and-click)이 시행되고 있는 주에서는 금융명세서를 등기하거나 채무자인 법인을 검색할 때 채무자의 이름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오류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만일 당해 법인의 주소나 대표의 성명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름이 비슷한 다른 법인을 고르는 실수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스피어링 툴 사건’의 파장

1. 스피어링 툴 사건의 개요

크레스트 은행/금융회사(貸主)는 스피어링 툴 제조회사(借主)와 차주의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주는 1998년 4월과 2001년 4월 2차에 걸쳐 미시간주에서 금융명세서를 등기하였다. 미 연방국세청(IRS)은 2001년 10월 역시 미시간 주에 2건의 조세담보권을 등기하였다. 대주는 차주의 이름을 Spearing Tool and Manufacturing Co.로 등기하였으나 IRS는 Spearing Tool & MFG Company, Inc.로 한 것이 차이점이었다. 2002년 4월 16일 차주는 파산 보호(Chapter 11.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하였다.

IRS는 대주에 대하여 조세담보권을 등기한 후 대주가 대출해준 15만3천불

32) 미국에서 회사를 뜻하는 Corporation, Corp., Incorporated, Inc., Company, Co.를 가리킨다.

33) E.g., G. Ray Warner, "Using the Strong-arm Power to Attack Name Errors Under Revised Article 9," 20 Am.Bankr.Inst.J. 22 (2001).

34) Pankratz Implement Company v. Citizens National Bank, 102 P.3d 1165, 1168 (2006).

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법³⁵⁾에 의하면 등기된 조세담보권 (filed tax lien)은 조세담보권의 등기 후 45일 이후에 행하여진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prior secured lender)보다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보부 채권자는 대출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전 45일 이내에 등기된 조세담보권이 있는지 검색해볼 필요가 있었다.³⁶⁾ 대주는 차주의 정확한 이름으로 조세담보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색하였으나 법인 등기부와 다르게 등기되어 있는 IRS의 조세담보권 등기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미시간주의 검색 로직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오류였기 때문이다.

대주는 파산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조세담보권은 연방법의 규율을 받고 연방법상으로는 납세자를 식별할 수 있으면 족한 바, IRS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약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차주의 이름을 표기하는 데 오류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³⁷⁾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툼을 놓고 미시간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파산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이 사건에 연방법상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검색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만, 이름에 약어를 사용한 것은 검색자로 하여금 연방조세채권에 대한 복수의 가능한 이름을 따로따로 검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하였다.³⁸⁾

그러나 제6지구 항소법원은 연방법상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을 단 한 번 검색하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성실한 것은 아니라며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나 “Mfg.”는 흔히 쓰는 약어들이고 미시간주에서는 검색을 할 때 약어도 찾아보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³⁹⁾ 그리고 항소법원은 IRS가 납세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州마다 電子的으로 검색하는 기술상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게 되므로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첨언하였다. 재판부는 IRS도 UCC 9편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35) 26 U.S.C. §6323(d).

36) *Texas Oil & Gas Corp. v. United States*, 466 F.2d 1040 (5th Cir. 1972). 이러한 경우에 검색의무를 모든 상업금융기관에 지을 게 아니라 이미 금융명세서를 등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존재가 드러나 있으므로 IRS가 각 채권자에게 조세담보권의 등기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LoPucki, *supra* note 16), at 15.

37) 재판부는 웹스터 사전과 법률문헌인용규칙(The Bluebook)을 참조해가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38) *In re Spearing Tool and Mfg. Co., Inc.*, 302 B.R. 351 (E.D. Mich. 2003).

39) 412 F.3d 656.

연방정부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마지못해 채권자가 된 것이므로 다른 자발적인 채권자들보다 특별히 우위에 서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방정부의 조세담보권이 은행의 대출채권 회수노력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⁴⁰⁾

2. 스피어링 툴 판결의 문제점

이와 같은 스피어링 툴 판결은 UCC 9편에 의한 채무자 이름의 검색상의 오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UCC 9편의 방식대로 할 경우 등기자나 검색자나 큰 노력이나 부담없이 정확한 채무자의 이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무자 기업의 설립지에서 법인색인부를 찾아 정확한 이름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IRS도 그러한 정보는 모두 갖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예외없이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를 갖고 있기 때문에 IRS는 동 번호발급 과정에서 해당 주별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IRS가 심각하게 오인케 하는 이름을 등기하게 되면 우선권을 상실하지만, UCC 9편의 방식대로 색인부에서 정확한 이름을 찾아서 등기(point and click)하는 경우 그러한 위험성은 배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IRS로서도 失보다 得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⁴¹⁾

그러나 스피어링 툴 사건은 이러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대신 각 담보권자가 해당 주에서 인정하는 표준 검색 로직 외에 略語와 같은 변형된 이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담보물에 대한 우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물론 확장된 검색 로직을 사용하여 변형된 이름 파일을 따로 수집한다면, IRS에 세무관련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고,⁴²⁾ 채무자의 이름이 변형된 조세담보권을 찾지 못했을 때의 손실 위험을 보험으로도 커버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적잖은 비용이 따르게 마련이며 여전히 우선권 상실(priority loss)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파헤친 로푸키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조세담보권에 관한 스피어

40) 412 F.3d 656-57.

41) LoPucki, *supra* note 16), at 20.

42) IRS 8821 서류(Form 8821)는 납세자가 그가 지정한 자료 하여금 현재 및 장래의 세무정보를 IRS 사무소에서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IRS측과 미리 약속을 하고 그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링 툴 사건의 여파로 담보권자는 변형된 이름을 검색하고, 그에 관한 통지(notice)를 접수하고, 필요한 보험(insurance)을 구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다툼이 생겨 자기가 보유하는 담보가 IRS의 조세담보권에 후순위(subordinated) 들어가므로 그에 따른 IRS와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였다. 이에 비하면 UCC 9편의 방식대로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을 검색하는 데 약간의 비용이 드는 것과 만의 하나 우선권을 상실할 위험성만 안게 된다.⁴³⁾

로푸키 교수는, IRS가 연방고등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여러 모로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勝者의 자리를 내놓고 싶지는 않겠지만, 大局的인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⁴⁴⁾ 즉, IRS가 조세담보권의 취득을 공시(notice of tax lien filing)하는 것을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principal executive office)의 소재지가 아닌 설립지(state of incorporation)에서 하도록 하고,⁴⁵⁾ 모든 연방 조세담보권의 등기를 UCC 9편의 방식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만일 조세담보권의 등기와 UCC 9편의 등기를 통합한다면 나머지 담보권도 자연히 통합될 터이므로 단 한 번의 검색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스피어링 툴 판례의 영향을 받아 어느 주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검색 시스템(point-and-click system for filing)을 채택하기를 주저할 것이고, 설립지에 가서 검색을 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름을 검색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좀더 광범위하게 검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검색을 하였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것이 많은 법률가들이 고심 끝에 만든 UCC 제9-506조(c)항의 새로운 해석이 되었다.⁴⁶⁾

당분간은 스피어링 툴 사건에서 제6지구 항소법원이 내린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 로푸키 교수가 해당 기관별로 따져본 것처럼 연방대법원이나 연방고등법원, IRS, 의회, 등기관 등 어느 누구도 그 결론을 바꿀만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그렇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더 建設的인 代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모든 州가 UCC 9편의 등기를 할

43) LoPucki, *supra* note 16), at 24-25.

44) *Id.*, at 25-28.

45) Lynn M. LoPucki and Elizabeth Warren, *Secured Credit: A Systems Approach* (Fifth ed.), Aspen, 2006, at 397-98.

46) William D. Warren & Steven D. Walt, *Secured Transactions in Personal Property* (6th ed. 2004), at 66-71.

47) LoPucki, *supra* note 16), at 31-32.

때 인터넷 기반의 포인트-앤-클릭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정확한 채무자 이름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당해 채무자의 이름은 정관에 규정된 상호가 아니라 인터넷 색인부에 나오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의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여 동산에 대한 조세담보권의 등기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설립지에서 반드시 하도록 하고, IRS 또는 다른 담보권자들이 전자적인 포인트-앤-클릭 방식으로 등기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IV.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본고에서 우리나라와는 담보법제가 다르고 등기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미국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 이유는⁴⁸⁾ 동산담보법제를 도입하게 될 한국에서도⁴⁹⁾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가증권거래소에서는 어느 상장법인에 문제가 생겨 그 주가가 폭락할 때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회사들도 투자자들이 혼동을 일으킨 나머지 주가가 떨어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그와 비슷한 인식 메커니즘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에서도 채무자의 이름을 혼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 많은 만큼 미국에서와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 이름을 등기하거나 검색할 때의 오류보다는 담보목적물 표시상의 오류 또는 혼동 가능성이 더 많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동산담보제도가 日本에서와 같이 재고자산과 같은 집합물을 대상으로⁵⁰⁾ 하는 경우에 등기사항 및 절차를 명확히

48)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의 동산담보제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남운삼,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향(上)—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1999.2.; 독일에서 한때 활발히 논의되었던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 非占有動産擔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미국 동산담보법과 비슷한 등기제도, 통일적 담보권을 도입하자는 학계의 주장을 소개한 논문으로는 양창수, “독일의 동산담보개혁논의—비점유동산담보제도를 중심으로”, 『법학』, 제44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6 참조; 그러나 동산담보법제의 典範이랄 수 있는 UCC Article 9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박현일, “개정 美동산담보법의 국내 담보법제에 대한 시사점”, 『경희법학』 제37권 1호, 2002.12. 참조.

49) 김제형, 「동산담보등록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용역연구보고서, 2006.2, 171면.

50) 위의 보고서, 91면.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A공장의 제1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을 회사의 사정으로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2 창고로 옮겼을 경우 등기부상의 기재가 제1 창고와 재고자산의 관련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내막을 모르고 제2 창고의 재고자산을 善意로 취득한 자는 제1 창고의 재고자산과는 무관한 별개의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또 B사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 기계, 기구, 장비를 생산라인을 옮겨 재배치한 경우에도 당해 물건의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다른 물건과 혼재·혼동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만일 위의 재고자산이나 기계·기구를 특정하여 공시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가 우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등기부에 올릴 때 당해 목적물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또는 다른 물건하고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V. 결론 - 가능한 해결방안

미국에서는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때 개개의 동산을 특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소유하는 일체의 재고자산과 장비, 채권, 은행예금” 하는 식으로 浮動擔保(floating charge)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⁵¹⁾

미국의 UCC 9편에 의하여 채무자 이름을 검색할 때의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현재로서는 포인트-앤-클릭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좋지만 정보기술의 진보 내지 기술적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실현가능한 代案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업체와 정부기관들이 검색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人工知能(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검색방법이 장차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⁵²⁾ 이 방법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흔히 저지

51) 미국의 Floating Charge에 관하여는 박환일, “미국의 부동담보제도”, 비교사법 제10권 4호, 2003.12.

52) 조달청은 2007년 2월 서울대학교 컴퓨터연구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온톨로지 기술을 적용한 상품정보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이 시스템은 정부조달(나라장터) 상품의 검색을 훨씬 편리하게 하고 상품정보를 국제표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가 상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품의 이

르기 쉬운 철자상의 오류를 컴퓨터가 기억하였다가 오류를 자동적으로 시정하고 제대로 된 단어로 자동완성시켜 주는 기법이다. 예컨대 포스코의 경우 2002년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라는 기존 상호를 “주식회사 포스코”로 변경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므로 검색하는 사람이 “포항종합제철” 또는 “포항제철”, “포철”이라고 쳐 넣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주식회사 포스코”로 자동완성시켜 주는 방식이다. 이름이 비슷한 회사가 있다면 폴더에 펼쳐서 보여주고 검색자가 그 중에서 고르게(point and click) 하면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의 법원과 같이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검색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온갖 착오의 가능성을 프로그래밍한다는 게 용이한 일이 아닐뿐더러 등기소 내지 검색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게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단 관할지역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법인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착오나 실수(errors and mistakes)를 추적해 나간다면 정보기술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특이하게 벌어지는 착오나 실수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새로 등장한 첨단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이용하면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개개의 담보목적물에 대해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시켜 놓았다가 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등기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담보목적물에 전자 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⁵³⁾를 부착 또는 내장시켜 놓고 RFID 태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해 놓는다면 그 자체가 전자등기를 예비한 상태가 된다. 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대해 정보를 등기할 때에는 RFID 리더를 통해 당해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등기부상으로 옮

름, 규격, 제조회사 등 일부 정보만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기본적인 어휘를 파악,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해 주며, 단어의 일부만 입력하더라도 컴퓨터가 이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조달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81만 품목에 달하는 상품정보를 민간에도 무상 제공하여 재고관리, 유통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뉴시스 2007.2.22.

53) RFID란 초소형 마이크로칩과 안테나를 내장한 태그로서 물품 등에 부착되어 전자 방식으로 당해 물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감지기(reader, sensor)를 이용하여 정보를 읽고 쓰고 지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착하는 물건의 성상에 따라 원판형, 원통형, 라벨형, 카드형, 상자형 등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 안에 개별 식별정보를 수록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감지기에 접촉하지 않고, 또 한 번에 여러 개 태그 안의 정보를 읽고 쓰고 할 수 있으므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자동인식 시스템’의 핵심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박원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172면.

기고 등기관이 등기연월일과 등기번호를 부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⁵⁴⁾

이와 같이 RFID 태그를 이용하여 동산담보를 관리한다면 미국에서와 같은 채무자의 이름, 또는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담보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해 전자태그가 손상되거나 그 기능이 정지되지 않는 한 RFID 태그는 당해 동산에 관한 소유자/채무자의 신원이나 담보권의 존재 여부 등의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김재형, 「동산담보등록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 2006.2.
- 박원일,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1호, 2006.7.30.
- _____,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제1권 2호, 2004.12.
- _____, “미국의 부동산담보제도”, 「비교사법」 제10권 4호, 2003.12.
- _____, “개정 美동산담보법의 국내 담보법제에 대한 시사점”, 「경희법학」, 제37권 1호, 2002.12.
- 日本企業法制研究會(擔保制度研究會) 報告書, 「不動産擔保から事業の収益性に着目した資金調達へ」, 經濟産業省, 2003.1.
- LoPucki, Lynn M., *Information Law: A Systems Approach Part I* (class packet), 2005.
- _____, "The *Spearing Tool* Filing System Disaster," UCLA School of Law, Law-Econ Research Paper No. 06-10 (March 26, 2006).
- _____, "Computerization of the Article 9 Filing System: Thoughts on Building the Electronic Highway," 55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 (1992).

54) 이에 대하여는 "비점유형 담보정보가 기록된 RFID 태그 및 이를 활용한 비점유형 담보정보 공시시스템"(특허 제10-0620399호)과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_____ and Warren, Elizabeth, *Secured Credit: A Systems Approach* (Fifth Ed.), Aspen, 2006.

인터넷 연합뉴스, 내일신문, 조선일보 기사 <<http://www.naver.com>> [2007.4.1]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SSRN) eLibrary Database Search, <<http://papers.ssrn.com/sol3>> [2007.3.31]

How to Overcome the Name Errors in a Newly Proposed Personal Property Filing System in View of the Recent U.S. Case

Park, Whon-II*

Now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a new collateral system based on personal properties possessed by small companies. In view of the same kind of collateral system employ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electronic filing seems to be inevitable in Korea. When a creditor is going to advance in reliance on corporate assets, he wants to know through the computer and the Internet the applicant debtor has granted to whom which property as collateral. If the data was mismatched with the search item or the searcher misspelled the search word, the searcher would be surprised to see other senior creditors prevail over himself with respect to the collateral. More often than not, we usually find ourselves in mistaking A Company for B Company. Sometimes the companies which changed their names on accoun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r corporate identity projects increasingly caused such mistakes and errors made by the public.

This article explains the UCC Article 9 filing system of the United States. Of course, the American collateral and filing system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But the U.S. system has accumulated plentiful cases and experiences with respect to the filing system, which could be learned and shared by Korean legislators and lawyers regarding similar cases.

In his recent article, Professor Lynn LoPucki described the *Spearing Tool* decision of the Sixth Circuit in June 2005 as a "disaster." He stressed that the decision eviscerated the debtor name error elimination project, on which scholars, Article 9 drafters and state filing officers collaborated for years, by holding a notice of tax lien filed in the Article 9 filing system to be effective even though

* Associate Professor of Law at Kyung Hee University.

it did not comply with Article 9's exact, correct name requir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9 filing system, a holder of the prior security interest provides notice to subsequent potential creditors by filing a financing statement. If a search by the debtor name produces some results of security interests with priority, the searcher would decline to advance or require different terms of the loan. But if the debtor's name is spelled incorrectly in either the financing statement or the search request, the searcher could obtain a wrongful information. However, the Sixth Circuit concluded that conducting a single search in the exact, correct name of the debtor under the current Article 9 filing system was not reasonable and diligent because the IRS's notice on tax lien of the debtor name using "&" and abbreviations is common.

Here in Korea, we can expect the debtor name errors could undermine the new non-real estate collateral system because the newly adopted electronic filing system is not error-proof. Furthermore, under the civil law system, any error or mistake concerning the asset to be identified and secured would jeopardize the whole collateral system.

In this regard, a sophisticated searching method employing artificial intelligence or ontology could be advisable. Take an example of POSCO which officially changed its name from Pohang Iron and Steel Manufacturing Corp. When a user inputs "Pohang Iron and Steel" or something like that, the searching window would complete automatically the searching word like "POSCO" in an exact and proper manner. Likewise, if the RFID tag is attached to or embedded in each personal property to be granted as collateral, the required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debtor and creditors already stored in the RFID tag could be transferred to the electronic registry of the filing office. There could be no error or mistake regarding the identity of collateral. At present, a useful technology has been devised and patented in Korea for the purpose of secured transactions.